

■ 2020년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와 관련 하여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당 사업지(인천광역시 남동구)도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(투기과열지구, 투기지역)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규제가 적용됩니다.

■ 따라서, 본 사업지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8조 11항에 따라 청약시 소유주택의 처분조건과 관계없이 당첨되어 공급계약서상 '처분 미서약자'에 서명 및 날인을 할지라도, 중도금 대출당시의 그 지역 대출규제상황(정부 시책에 따른 규제지역변경 등)및 개인의 사정에 따라 소유 주택의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당 사업지 중도금 대출 은행인 수협은행도 규제지역의 대출 규정을 적용하여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(대출신청건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기로 약정하는 다주택자도 포함)를 중도금대출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. 또한, 타 사업지의 중도금 보증건수(주택보증공사등)로 인하여 본사업지의 보증한도액 및 건수가 제한 되어 본 사업지에 적용될 예정 입니다.

■ 특히, 무주택자는 청약시 기준이 되는 주택소유여부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거한 주택 소유여부)와 중도금대출시의 적용되는 취급 은행의 주택소유여부기준(무주택 기준 등)이 다름에 따라 소형저가 주택이나,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등 배우자 및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도 대출시 본인의 주택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타사의 분양권 소유자의 경우 중도금 보증건수 및 보증 한도액에 따라 대출이 달라 질 수 있으니 이점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상기의 내용이외에도 계약자마다 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, 대출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봉된 '수협은행 중도금 대출 안내장' 참조 하시고, 미리 대출자격 및 조건을 확인후 중도금 대출 신청 기간 내에 서류제출 및 대출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아울러,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4항 7호에 의거 부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 이전 절차 및 서류(양당사자간 구청의 검인도장이 날인된 증여계약서 필수)가 필요하니 공동명의를 진행 하시고자 하는 계약자분은 당 사업지로 문의 하시어 대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이안 논현 오션파크

문의: 1877-2135